82. 트리클로로에틸렌 세척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독성간염, 스티븐존 슨 증후군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세척 작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망)근로자 김○○은 2005년 11월 21일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세척 및 검사

 작업을 수행하던중. 2006년 1월 10일스티븐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입원치료 중 피

부증상 및 독성 간염의 악화로 2006년 1월 21일 사망하였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망 김○○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TCE로 세척작업을 하였다. 세척업무는 조립용 가구제품을 세척기 속에 넣었다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꺼내는 작업으로 발생된 TCE 증기 노출에 대한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가 사용되지 않았다. 냉각코일은 작동하지 않았고, 배기장치도 없었다. 세척작업량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웠고, 1시간당 3~4회 및 1 회당 15분정도 세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3. 의학적 소견: 망 김〇〇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도장작업을 시작했고, 작업 시작 약 20일경 배에 좁쌀 크기의 홍반이 발생하였고, 1주 후에는 온 몸이 홍반성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1월 5일부터 얼굴에 홍반, 부종, 각질이 발생하였다. 1월 9일에는 호흡곤란이 발생, 증상이 심해져 2006년 1월 11일 S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스티븐 존슨 증후군 의심되어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9일 만인 2006년 1월 21일 사망하였다.
-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망)김OO은
 - ①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한 세척 및 포장 작업을 시작한지 20일 만에 피부 증상이 발생하여 스티븐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된 후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 ② (망)김〇〇은 TCE 세척작업 전담자는 아니었으나, 사망 전 의무기록과 유가족 진 술에 의하면 세척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③ 작업환경 재현 평가 결과 세척작업의 TCE 노출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TCE에 의한 SJS는 노출농도나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특발성 기전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시료 노출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세척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척조 주변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TCE에 단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 ④ TCE는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국내외에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망 근로자가 위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다른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망)근로자 김OO은 작업 중 노출된 TCE에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독성간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